

공유재산관리계획(취득)의결안 심사보고

1997년 12월
사회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1월 5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
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1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
위원회(1997년 12월 3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장 조택룡

가.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(세출)에 의거
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·정차로 인한 교통
체증 해소
-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확충에 기여

나. 주요골자

-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

-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가 또는 업무지구 1~2개소에 1,653m² (500평)의 부지 선정 매입
 - 양동상가 인근지역이나 염주상가 인근 또는 상무신도심 업무지구 등을 고려
 - 주민 여론 및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치를 선정할 것임.
- 설치후 직영 또는 위탁관리 등 방안을 검토
- 취득방법
 -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협약을 거친 후 2개 감정평가원에 감정평가를 의뢰, 산술평균가액에 의거 매입

※ 공영노외주차장부지 취득재산 대상내역

(단위 : m², 천원)

명 칭	소재지	면적	소요예산	취득시기	비 고
공 영 노 외 주차장	서 구 관 내	1,652 (500평)	2,148,135	'98년도	매입당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소수(1~2개소)결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전문위원 박 홍 표

-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의 현실은 불법주·정차량을 양산하여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의 위험, 시간의 손실 등 여러 가지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여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정신적·물질적 기회비용을 증대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바,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은 충분히 의미

있는 일이며 그를 위한 부지 매입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 이번 의결안은 긍정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

○ 첫째, 1,652m² 즉, 500평을 목표로 하게 된 그 근거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겠고

둘째, 주차장의 확보는 교통문제 해결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·정차량의 더욱 철저한 단속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노력이 아울러 병행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며

셋째, 주차장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건설이 오히려 차량의 집중을 유발하여 인근의 교통체증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과

넷째, 이번의 사업은 어떠한 기준보다도 비용·편익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취득재산 대상내역

(단위 : m², 천원)

명칭	소재지	면적	소요예산	취득시기	비고
공영 노외주차장	서구관내	1,652 (500평)	2,148,135	98년도	매입당시 여건을 고려하여 개소수 (1~2개소) 결정